

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실태조사 대상 및 내용 등) ①「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의 대상은 항공우주산업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항공우주산업의 생산·수주·잔고 및 수입·수출 등에 관한 사항
2. 항공우주산업의 자본금, 출자금, 그 밖의 유·무형자산 등에 관한 사항
3. 항공우주산업의 설비투자 및 고용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되,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, 전문적인 연구기관·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
< 신설 >	제2조의2(실태조사 대상 및 내용 등) ①「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의 대상은 항공우주산업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다.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항공우주산업의 생산·수주·잔고 및 수입·수출 등에 관한 사항 2. 항공우주산업의 자본금, 출자금, 그 밖의 유·무형자산 등에 관한 사항 3. 항공우주산업의 설비투자 및 고용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항공우주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되,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, 전문적인 연구기관·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< 신설 >	부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